

식품·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보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영업소	영업소 명칭(상호)	영업등록번호
	영업소재지	
변경 품목	제품명	품목보고번호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제품명		
소비기한		
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	뒤 쪽에 기재	
변경사유		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식품(식품첨가물)품목제조
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. 소비기한 연장사유서(소비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	---

(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)

변경 전			변경 후		
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		
2			2		
3			3		
4			4		
5			5		
6			6		
7			7		
8			8		
9			9		
10			10		
11			11		
12			12		
13			13		
14			14		
15			15		
16			16		
17			17		
18			18		
19			19		
20			20		
21			21		
22			22		
23			23		
24			24		
25			25		

유의 사항

-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
- 품목제조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 전이나 제품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